



# 2015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추진계획

우리구 아파트의 노후된 담장을 철거한 후 개방하여 열린숲길 조성 및 생활권 주변의 부족한 녹지확충,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환경 및 커뮤니티 공간조성 등으로 주민만족도 제고

## I 추진 근거

- 2015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대상지 추천[성수1가제1동-5308(2014.7.9)]
- 2015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추진계획[조경과-1534(2015.2.4)]

## II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6.
- 위 치 : 성동구 성수강변건영아파트(성수1가1동 710)
- 규 모 : 1,500 $m^2$ (담장철거 150m)
- 총사업비 : 75백만 원(시비 45, 구비 30)
  - ※ 구비(자부담)는 공원녹지 시설개선비(포괄비) 활용하여 확보
- 사업내용 : 노후된 담장철거, 열림숲길 조성 및 개방, 녹지량 확충 등
- 예산과목 : 조경과, 생활주변녹지확충, 생활주변녹지확충, 아파트열린녹지조성, 자치단체자본보조(시비)  
공원녹지과, 자연과 함께하는 도시개발, 조경정비 및 관리, 공원 녹지 시설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구비)

## III 추진 방향

- 설계·시공 및 관리 등 전 과정에 주민참여 활성화 유도
- 수목식재 위주의 녹지를 조성하고 시설물 설치 최소화
- 기존 녹지훼손 및 아파트내 녹지(담장주변 외의 지역)정비 지양

## IV 세부추진계획

### ■ 지원 대상지확정

- 입주민의 2/3 동의 및 7년간 녹화협약 체결 [협약서(안) 붙임]
  -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저층 입주민의 의견 수렴

### ■ 사전절차 이행

- 주택법 제42조제2항(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의한 행위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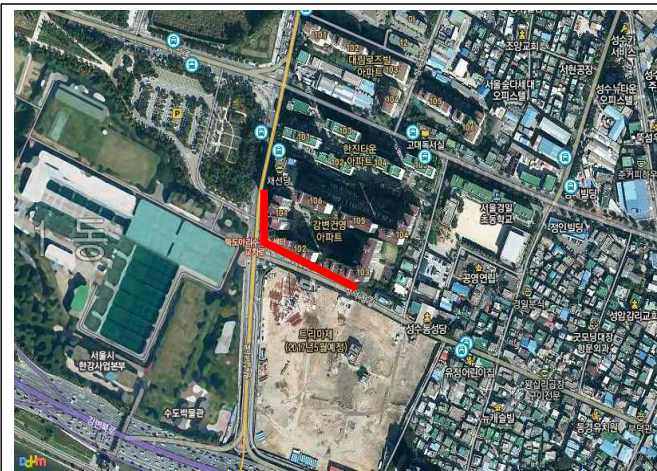
※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절차 등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라 용도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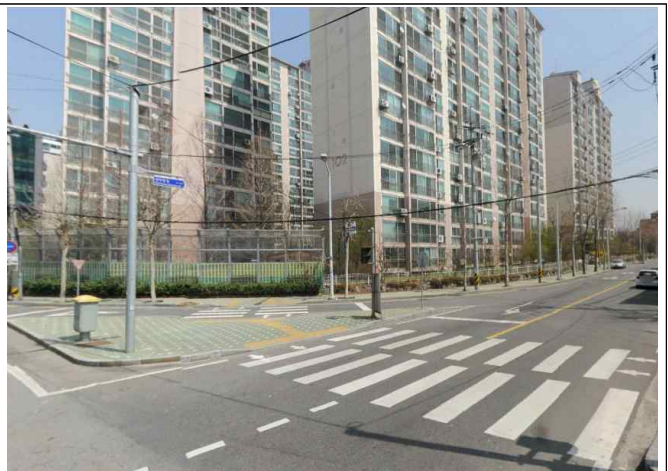
## V 추진일정

- 2015. 2. : 주민동의 및 행위허가(주택과) 사전절차 이행
- 2015. 2. ~ 3. : 실시설계용역 시행 및 주민설명회
- 2015. 3. ~ 4. : 서울시 설계심의 및 계약원가 심사
- 2015. 4. ~ 6. : 공사시행

## VI 위치도 및 현황사진



위 치 도



현황사진